예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예술인 고용보험 20문 20답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근로복지공단

그림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목차

1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란 무엇인가?

2 • 일반근로자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 •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떤 사람들이 적용을 받나요?

4 • 예술활동자격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가입대상인가요?

5 • 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6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7 •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목차

8 •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가입이 되지 않나요?

9 • 보험료는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요?

10 • 소득기준을 50만원으로 정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11 •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회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 계약금액이 노무제공의 대가와 저작권료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3 • 65세를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4 • 예술강사에게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목차

15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16 • 단기예술인도 기준보수 적용을 받나요?

17 • 원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지원은 없나요?

18 • 여러 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 받게 되나요?

19 •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예술인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20 • 고용보험에 가입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란 무엇인가?

예술인의 잦은 이직과 낮은 보수로 인한 생계 위협을 해소하고 안정적 문화예술활동 지원 방안 마련 필요

2017년 예술인 및 특수고용직 등 고용안전망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국정과제선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고용보험법' 에 예술인 특례제도 신설로 예술인이 실직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생계위험에 대비 가능

보험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와 예술인이 보험료를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주에 피보험자격신고 등 의무 부여

2. 일반근로자와 예술인 고용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분	근로자	예술인
적용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문화예술용역 계약 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예술인 (단, 소득합산신청으로 50만원 이상 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입사자 등	좌동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고안, 직능 0.25~0.85%	실업급여 1.6% 고안, 직능 미 적용
실업급여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출산전후 (휴가)급여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충족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3.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떤 사람들이 적용을 받나요?

4. 예술활동자격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가입대상인가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에서는 당연 적용되는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 에 따른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해당하나 예술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예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5. 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사업주와 예술인이 균등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에서 예술인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예술인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한 사업주는 예술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1.07.01.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요율이 1.6%에서 1.4%로 인하됩니다. (예술인 부담분: 0.8%에서 0.7%로 인하)

6.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상시적으로 노무제공을 받는 것

고용, 도급, 외주 등의 형태와 무관하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행에서 상시적으로 노무제공을 받는 것을 의미

일시적, 일회적 타인사용은 제외

일시적, 일회적으로 타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상시적 노무제공으로 보지 않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은 경우 해당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불가

7.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득금액을 계약상 종사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상 소득(계약금액)을 종사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21.1.1.~21. 3.31. 계약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계약금액 300만원 ÷ 종사개월수 3개월 =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 경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므로 **당연적용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이 월력으로 맞지 않는 경우

만약에 계약기간이 월력으로 맞지 않아 종사개월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 × 30 / 계약기간의 총 일수**) 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8.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가입이 되지 않나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건별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도 둘 이상의 계약으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합산을 요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사업주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50만원 이상 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신고 불가)**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전화 02-2097-9250, 팩스 0502-223-3203)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가입이 되지 않나요?

(산정사례)복수사업장 소득합산신청

기준보수 80만원 미 적용

- (A사업주) 계약일자 3.1.~4.30. 월평균소득 30만원 계약
- (B사업주) 계약일자 4.1.~6.30. 월평균소득 30만원 계약
- (C사업주) 계약일자 5.1.~7.31. 월평균소득 35만원 계약

사업주	계약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A	3/1~4/30	30만원	30만원			
B	4/1~6/30		30만원	30만원	30만원	
C	5/1~7/31			35만원	35만원	35만원
합산소득		30만원	60만원	65만원	65만원	35만원

4/1~4/30중 신청 시
4/1~4/30의 기간에 대해 60만원 적용
* 계약1의 계약종료일 이전에 신청함에 유의

5/1~6/15중 신청 시
5/1~6/30의 기간에 대해 65만원 적용

8.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가입이 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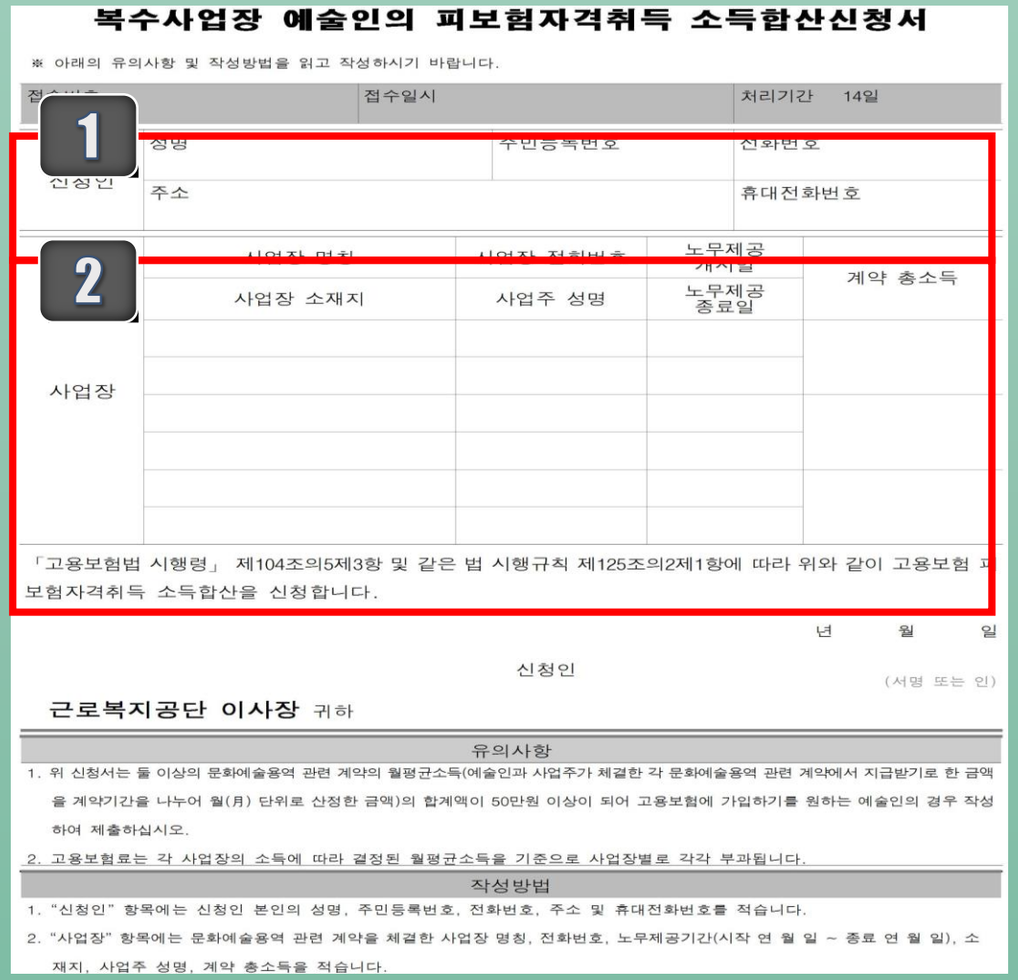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	노무제공 개시일	계약 총소득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성명	노무제공 종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위 신청서는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을 나누어 월(月) 단위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예술인의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2. 고용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 항목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노무제공기간(시작 연 월 일 ~ 종료 연 월 일), 소재지, 사업주 성명, 계약 총소득을 적습니다.

신청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합산을 신청하는 예술인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2 항목기재 시 유의사항입니다.

- 사업장명칭 등: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노무제공개시일과 종료일은 계약서상의 용역기간을 기재합니다.
- 계약 총소득금액은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상의 소득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8.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가입이 되지 않나요?

소득합산신청의 경우 기준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합산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의 보험료 산정 시 **일반예술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 기준보수로 보험료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합산신청 시 산정된 월평균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신청기한은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 합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또한 50만원 이상이 되는 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9. 보험료는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요?

예술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0.8%를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단, 2021.07.01.부터는 보수의 0.7%로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노무제공의 대가(총 소득액 = 계약상의 금액)에서 비과세와 필요경비 20%를 공제한 후 보험료율인 1.6%의 절반인 0.8%를 곱한 금액이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입니다.
- 2021.07.01.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1.6%에서 1.4%로 인하됨에 따라 예술인 부담분도 0.8%에서 0.7%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예술인의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기준보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일반예술인'은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보수 80만원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80만원 * 0.8% = 6,400원, '21.07.01.이후 80만원*0.7%=5,600원)

10. 소득기준을 50만원으로 정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 적용제외 기준 고려

- 일반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미만 근로자입니다.
- 주 15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고려 되었습니다.

예술인 실태 고려

-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2018년) 결과 확인된 예술인의 소득실태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노 · 사 · 정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

- 근로자 적용제외 기준 및 예술인의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노 · 사 · 정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적용제외 소득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11.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술인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 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술인 본인이 직접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와 함께 사업주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금액이 노무제공 대가와 저작권료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간이 계약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계약서가 고용보험 가입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간이 계약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 간이 계약 양식에는 '노무제공 대가'와 '기타비용'을 구분하여 사업주와 상호 합의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 계약 양식은 다음의 경우에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용역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문화예술용역 수행 결과 노무제공의 대가와 기타비용 등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상호합의하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금액이 노무제공 대가와 저작권료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일반)

※ 동 양식는 사업주의 문화예술용역 의뢰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사업주와 체결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이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형화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견본적 계약양식이므로, 예술계 현장에서는 동 양식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적용,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법률적인 감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당사자	사업주		업체명	전화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주 계약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 계약 당사자(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 계약 당사자(2)**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계약당사자인 예술인이 1인일 경우 주 계약당사자란만 작성

** 동 계약이 정한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인을 보조하여, 해당 문화예술용역의 완성을 위해 일정 부분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총칭함
(주 계약당사자인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을 보조하는 예술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다수의 부 계약당사자가 있는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사업주는 계약의 상대방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고 등 피보험관리를 위해,*
동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과 복수의 문화예술용역이 포함된 일괄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주 계약당사자)의 용역 외에 이를 보조하는 예술인(부 계약당사자)의 용역이 포함된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용역을 담당하는 예술인 또한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야 함
(하나의 계약서 또는 계약 당사자인 예술인별 각각의 계약서 모두 가능)

★ *동 계약기간 중 부 계약당사자인 예술인(보조)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 등 계약 당사자의 변경 발생 시, 사업주와 예술인(주)는 동 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갱신된 계약서에 따른 피보험관리(고용보험 신고 등)를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함*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에 따른 업무·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획·분석, 연습, 자료수집 등 실질적인 업무·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정함 * 예술인인 계약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 계약기간을 달리하여 작성
	가. 주 계약당사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부 계약당사자(1)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부 계약당사자(2)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기타 사항: ※ 계약기간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명시
2. 계약대상 (업무내용)	① 업무·과업의 내용 : ※ 예술인 계약당사자(주, 부)가 다수일 경우, 각 계약당사자별 내용 기재 ② 기타: ※ 업무수행에 관한 시간, 장소 등 특정이 필요할 경우 명시
	① 계약금액 : (총)원 ★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은 계약금액 중 예술인의 노무제공(인건비성 금액으로 노무 제공을 위해 수반되는 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산정)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 등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계약금액 설정(예: 문학 및 만화분야의 저작권료, 인세, 출판대금 등, 미술분야의 일괄 용역대금 등)이 아닌 노무제공 관련 비용과 노무제공과 관련없는 비용(기타비용 등)을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3. 계약금액	**가. 주 계약당사자 ( )원**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나. 부 계약당사자 1 ( )원** ※ 부 계약당사자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다. 부 계약당사자 2 ( )원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② 지급방식 : [ ] 현금으로 직접 지급 [ ] 예술인 명의 통장 입금(은행: ,계좌번호:) ③ 지급시기 : 선급금 원(년 월 일까지 지급) 중도금 원(년 월 일까지 지급) 잔금 원(년 월 일까지 지급) 월 단위지급 원(매월 일까지 지급) ④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 및 예술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⑤ 기타 사항 : ①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② 지급방식 : [ ] 현금으로 직접 지급 [ ] 예술인 명의 통장 입금(은행: ,계좌번호:) ③ 지급시기 : 선급금 원(년 월 일까지 지급) 중도금 원(년 월 일까지 지급) 잔금 원(년 월 일까지 지급) 월 단위지급 원(매월 일까지 지급) ④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 및 예술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⑤ 기타 사항 :
4. 권리·의무	①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해지 포함)하는 경우 예술인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등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사항*은 다음에 명시한다. 예) 저작권 등 권리의 귀속, 수익의 배분, 위임, 책임면제, 자격의 확인, 보증, 보험,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1) 사업주의 권리·의무 (2) 예술인의 권리·의무
5. 계약의 갱신·변경 및 해지	① ※ 계약의 갱신 변경 및 해지에 관해 특정이 필요할 경우 명시
6.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①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경우 예술 분야별 분쟁해결 절차 또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에 따라 해결한다.
7. 계약의 효력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별 문체부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상기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 및 보관한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2항, 제5조의2 이행).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예술인(주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예술인(부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예술인(부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13. 만 65세 이상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65세 이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예술인 피보험자격이 단절 없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14. 예술인강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예술강사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용역'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문화예술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하는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용역계약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술강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15.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구두계약에 의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사업주가 제출하게 되며, 이 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외한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예술인과 구두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피보험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 다만, '예술인복지법' 등에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발생 시에 상호주장을 입증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5.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시정명령 등 위반)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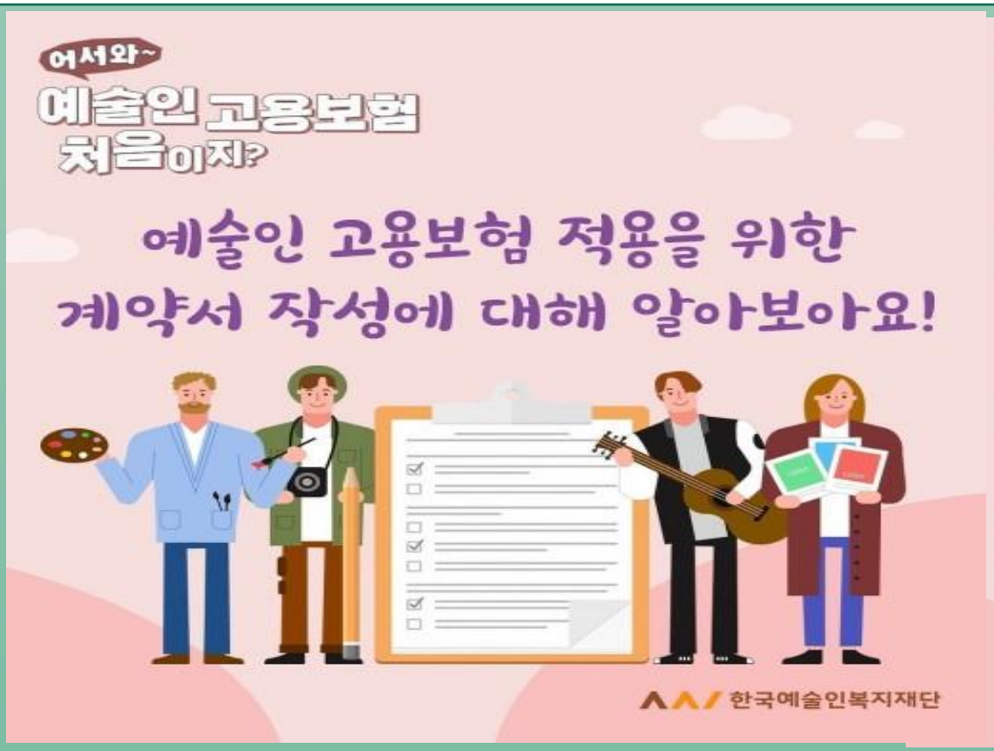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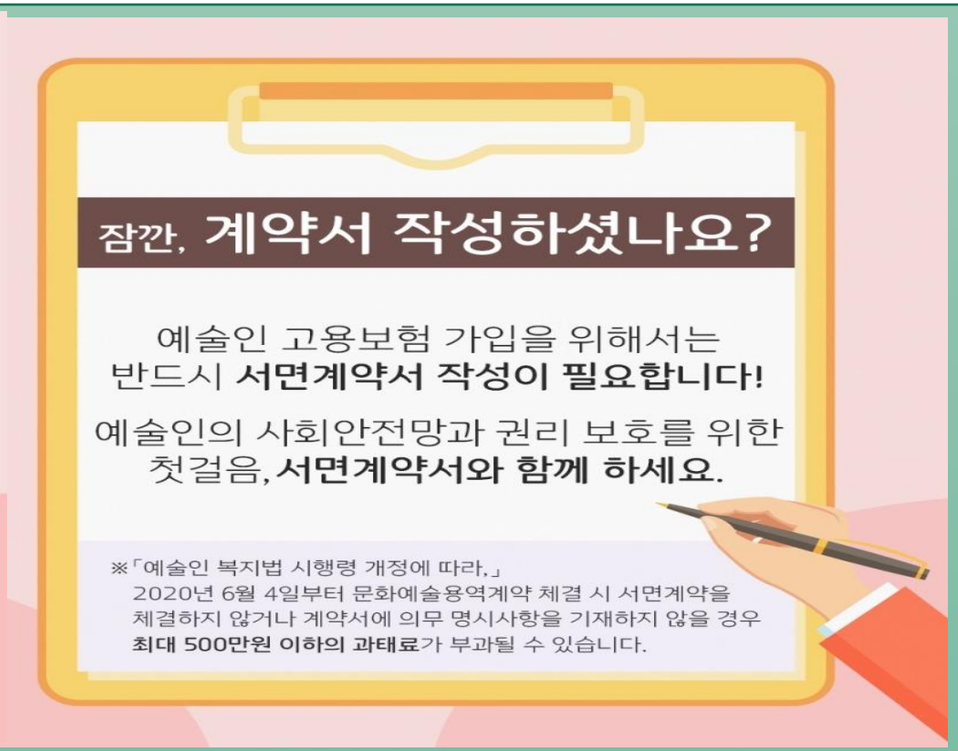

16. 단기예술인도 기준보수가 적용되나요?

단기예술인은 기준보수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 달 15일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통하여 제출된 보수총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기예술인의 보수총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예술인이 제공한 노무제공일자나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지급된 금액)에 비과세와 필요경비 20%를 공제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3일, 10일, 21일의 3일간 노무를 제공하고 각 일자별 100,000원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총소득액 150만원 * 0.8로 산정된 120만원을 보수총액으로 기재합니다.

17. 원천공제되는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지원방법은 없나요?

사업장 규모 판단 시
예술인 수는 관계없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만으로 판단

지원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예술인으로 이중 취득된 경우
각 사업별 보수합산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만 지원

지원수준

- 사업주와 예술인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는 기간과
별도로 예술인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제외

- 전년도 재산 6억원 이상,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인 예술인

18. 여러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각 계약건 별로 당연적용 대상인 경우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건 별로 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모두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중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근로자로 피보험 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라면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가 됩니다.
- 또한 예술인으로 취득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됩니다.

19.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예술인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신이 수행해야 할 문화예술용역 관련 노무를 제3자를 통하여 수행한 것이라면 이 경우의 사업주인 예술인은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은 아니며,
- 오히려 사업주에게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예술인이 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업주로서 피보험자격 신고의무와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의무가 발생됩니다.
-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0. 고용보험 가입할 경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에 대해서는 실직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구직급여나 출산전후급여를 통하여 생계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상태로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여 합니다.
-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20. 고용보험 가입할 경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동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했어야 합니다.

20. 고용보험 가입할 경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급수준

- **기초일액**

  -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일 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66,000원)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다만,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는 4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20. 고용보험 가입할 경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

(사례) 사업주(A) · 예술인(B)간 '22.3.11.~12.20.간 계약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 4월 ~ 11월(8개월) + [(21+20)/30](1.37개월) = 9.37개월

- 단기예술인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개월		
	3개월			1.3개월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20. 고용보험 가입할 경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세요~

연락처

구직급여 상담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서울특고센터 예술인가입부
대표전화 02-2097-9250
팩스 0502-223-3203

구직급여 상담은 고용노동부, 가입상담은 근로복지공단

감사합니다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

근로복지공단